“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시간대별 교사를 배치하여 기본보육시간에는 담임교사를, 연장보육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기본보육에 보육료를, 연장보육에는 이용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조교사가 전환·겸임하는 경우)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1. 추진배경

가. 무상보육과 맞춤형보육의 시행

’13년 0-5세반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이 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하게 되었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늘어나 0-2세반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11년 28.6%에서 ’15년 34%로 증가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실제 보육 수요에 필요한 만큼 적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6년 7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었다. 맞벌이, 구직, 돌봄 사유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두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의 적정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려 하였다. 또한 맞춤반과 종일반의 보육료에 차이를 두어 장시간 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맞춤형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요구사항[1)]

맞춤형보육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종일반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던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안고 어린이집으로 향해야 했다. “우리 아이만 매일 늦게 남아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늦게 퇴

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지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미안해해야 했다. 아이를 늦게 데려가야 하는 경우 여전히 눈치를 봐야만 한다고 부모님들은 이야기한다. 종일반 자격을 보유한 0-2세반 아동이 70%였지만, 실제 17시 이후의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20%에 불과하였다. 장시간 보육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지만 자격을 받아놓은 아동이 많은 면도 있었고, 실제 필요한 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어머니가 취업한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희망시간이 9시간 7분인데 반해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이었다. 또한 비정기적이거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취업을 준비하거나 학업 중인 경우, 자격 증빙이 어렵거나 자기기술서 서술을 해야 하는 경우 종일반 자격 증빙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종일반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일과 중 휴게시간도 갖고 다음 날 보육준비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아이가 하원할 때 까지 당직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점차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 근무시간은 9시간 17분으로 44분의 휴게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근무하고 있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도 늦게까지 남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맞춤형제도가 시행된 이후 맞춤반과 종일반 간 보육료에 차이가 있었지만, 장시간 남아있는 아동을 위한 시간과 연결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보육에 대한 유인이 낮았다.

2. 그 간의 진행경과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운영

교사의 근로여건이 변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아동을 돌보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맞춤형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7년부터 맞춤형보육에 대한 제도의 효과 분석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준비가 시작되었다. 장시간 보육 수요가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시간과 보상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7년 8월부터는 보육 분야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 운영하였다. '18년 8월까지 1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이용 현황 분석, 표준보육시간 등 적정 보육시간, 표준보육시간 적용 시 보육비용 지원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TF는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보육시간과 추가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각 시간별로 교사를 배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개편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내실 있는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수요표출을 위한 기제가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부모의 비용부담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영아의 발달을 고려한 가정 양육과 시설 양육의 균형을 위한 단시간 보육에 대한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후 TF 제안에 대해 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교사가 참여한 현장토론회와 두 차례의 부모토론회를 진행하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가정 먼저 고려한 정책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상기하는 한편 교사의 질이 곧 보육이 질로 직결되며,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보육정책의 과제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의무화와 주 52시간 근무 등 고용 관련 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적정 보육시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부모토론회는 현재 보육 환경과 어린이집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한 후, 조별로 토론을 거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표출했다. 이용 수요에 따라 자부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토론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한편, 국회는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제도의 보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는 안, 보육과정을 구분하고 교사를 배치하는 안 등 다양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논의되었다.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제1항)하고, 보육시간별로 교사를 배치(「영유아보육법」 제17조)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19년 4월)를 거쳐 '20년 3월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시범사업 운영

TF 제안이 논의되고,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제 실행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개편안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범적용과 실제 적용 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는 준비가 필요했다. 개편안이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이 변화할 수 있을지, 연장보육을 적용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 보육이용과 보상을 연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19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정리하고, 보육료, 인건비 지급 등에 관련된 예산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하였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지역을 모집 및 선정한 결과, 서울 동작구와 부산 동래구(대도시),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경기 양평군(농어촌) 4개 지역의 102개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에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간대에 교사를 채용, 배치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기본적인 모형이 적용되었다. 연장보육의 보육료는 월 단위로 적용하였고, 수요 표출 기제 방식으로 일정 시간 이상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구간결제 방식을 적용·운영하였다. 시

범사업을 5월에 시작하다보니 초기에는 연장보육 수요를 구분하고 운영하는 방식,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의 공간 활용, 교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었다. 교사가 배치된 이후부터는 연장보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어 아이들의 돌봄과 휴식에 중점을 두어 연장반을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본 사업에 무리 없이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방문과 의견수렴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시범사업의 적용 전·후로 부모, 교사, 원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심층면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원장님들과 운영에 관련한 워크숍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육분야 전문가들과 시범사업 내용과 본 사업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미참여기관 원장님들이 함께 모여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사업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시간도 가졌다.

시범사업 결과, 휴식시간과 보육준비시간을 갖게 된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장시간 아이를 맡겨야 했던 부모님들도 좀 더 안심하고 활기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였다. 다만, 이용한 만큼 보육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기준시간보다 덜 이용하면 부담이 생기는 구간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육료의 지원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연장보육반을 운영한 원장님들도 교사의 처우개선과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좋은 보육교사를 연장보육반에 채용·배치하는 것이 연장보육반 운영의 질에 직결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본보육반 아이들이 4시에 하원하고 교사가 배치된 연장보육이 4시부터 이루어져야 기본보육반의 담임교사가 이후의 보육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이들도 시간에 따라 반을 이동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저녁시간대라는 점과 농어촌과 같이 교사 채용이 어려운 곳, 그리고 연장반 수가 많은 곳에서는 모든 연장반에 신규 채용한 교사를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연장보육반 교사의 신규채용 외에 보조교사와 시간연장(야간연장) 교사의 전담,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겸임근무를 통해 교사를 배치할 수 있었다.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방안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모형

개편안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동과 부모의 보육 수요에 따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시간 및 과정에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형이다.

연장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서 기본보육반 담임교사는 적정 시간 보육업무를 한 후 휴게시간과 준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담교사 배치로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연장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시간 보육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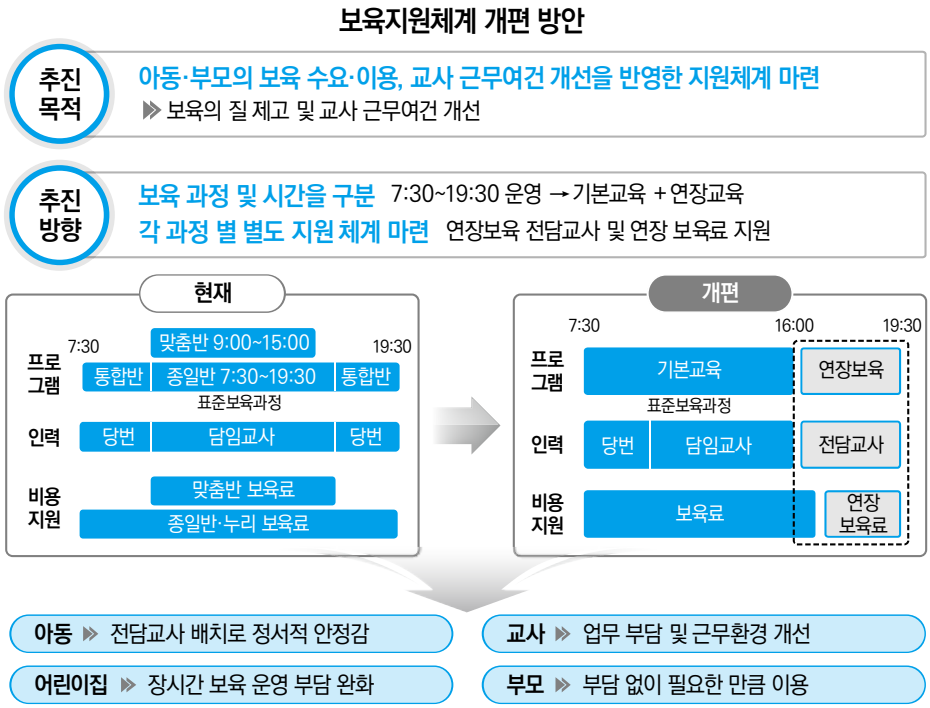

나. 기본보육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맞춤반과 종일반 구분은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본보육을 보장한다. 기본보육시간은 9시에서 16시까지의 7시간이 기준이 된다. 기본보육 시간은 교사의 1일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보육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어린이집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7시간으로 설정되었다. 기본보육시간의 보육료는 교사의 근무시간 8시간과 초과근무시간 30분을 반영하고, 기본보육 7시간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의 등원시간, 16시부터 17시까지는 순차적 하원시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기본보육 보육료는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8시간 30분)의 인건비, 급식 1회·간식 2회 제공에 필요한 급식 및 간식 재료비, 연간비용을 반영한 시설설비비,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의 보육 활동을 반영한 관리운영비와 교재교구비를 포함하고 있다.

다. 연장보육 : 자격, 운영, 교사배치 등

연장보육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의 시간으로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부모님이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반 이용 여부를 상담하고 연장보육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0-2세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종일반 자격과 유사하게 취업·구직, 돌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반 자

격을 갖게 된다. 다만, 기존의 종일반 자격제도를 운영할 때 개선의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구직활동과 돌봄수요의 인정범위를 확대(단시간근로 인정, 임용·채용 시험 응시 및 준비 인정, 방송통신대·사이버대·논문 준비 인정, 다자녀 3→2명 등)하고, 서식을 간소화(기존 종일반 사유확인서·자기기술서→연장보육 신청 사유서)하여 연장보육반 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3-5세반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반은 16시부터 편성하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하거나 장애아가 있는 경우 1:3, 영아반은 1:5(0세반 아동 포함 시 1:3 가능, 어린이집 당 1개반), 유아반은 1:15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설정하였다. 다만, 학기 초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긴급한 연장보육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는 영아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탄력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연장보육반을 신설, 운영하려면 일정한 수요에 따라 반을 편성하고 교사도 채용·배치하여야 하므로, 부모님들께 월 1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연장반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연장보육 이용시간의 상한이나 하한의 기준은 없으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해보았던 구간결제방식은 일정 시간 기준에 도달해야만 지원을 받다보니 적게 이용할수록 자부담이 발생하였고, 이는 부모님들의 불만족으로 이어져 본 사업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결과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연장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장반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본보육 시간의 보조교사가 연장반을 전담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며, 시간연장(야간연장) 교사도 연장반을 전담할 수 있다. 인건비는 4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자동전자출결시스템으로 아동의 출결관리를 해야 하며,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으로, 연장반 월 이용시간이 일정기준 이상(영아반 30시간, 유아반 8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시범사업에서도 지역과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신규로 연장반의 교사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저녁 근무시간대라는 점, 농촌이라는 점,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구도심 지역인 점, 연장반 수가 많다는 점이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낮시간 보조교사에 비해 반을 전담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연장반 전담교사에게는 추가적인 처우개선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교사 인건비 외에 전담교사 수당(월 1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인 경우, 다수의 연장반이 있어 교사 채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담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장반은 연령 통합 보육 프로그램으로 놀이와 쉼 위주로 운영된다.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참고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장보육반 전용 특별활동을 신설할 수 없으며, 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에 다녀오는 재등원은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라.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연장보육료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자동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 확인된 아동의 이

용시간에 따라 지원된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은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태그 등으로 자동으로 체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등하원 시각을 부모에게 전송하고 출석 관리와 함께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관리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4. 시행을 준비하며

개편안은 '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연장보육 이용 시 연장보육료를 지원하고, 연장반을 편성하고 연장반 교사를 채용 및 전담교사 전환·겸임으로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마다 준비상황도 다를 수 있고, 연장보육반의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반 편성여부가 결정되고, 교사의 채용 여부에 따라 연장보육반이 편성되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개편안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연장보육이 필요한 장시간 이용 아동의 보육을 더 잘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본보육은 현재의 보육과 똑같이 운영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도 수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다. 아동의 이용 수요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되, 연장보육 수요가 있고 교사를 배치한 곳에는 지원을 한다는 점이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모형을 준비하는 한편 현장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기본보육시간의 0-2세반의 보육료는 '19년 단가 대비 평균 7.9% 인상(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 인상) 되었다. 기존의 맞춤반, 종일반으로 이원화된 보육료가 일원화되고, 기본보육반 담임교사의 근무시간(1일 8시간 근무와 30분의 초과근무)과 보육과정과 시간을 기반으로 기본보육반의 보육료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보육료가 2만원 인상되었고, 교사의 처우개선(36만원으로 3만원 인상)과 운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856억원도 국고로 지원하게 되었다. 연장보육료가 신설(639억원)되었고,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월 100.2만원)와 수당(월 12만원)이 지원되고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의 일부(30%, 167억원)도 지원된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위해 등하원 자동인식장비, 비콘(Beacon)도 1회 지원한다(93억원). 담임교사의 지원비도 인상되어 0-2세반은 월 24만원, 3-5세반은 월36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이 지원된다.

'20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어 세부모형이 마련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분야 전문가, 어린이집 교사·원장, 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지속하면서 개편안 모형과 세부시행방안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동영상 강의, 40회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세부방안을 보완하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 시행안을 확정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외에도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뱅크(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나눔정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하고 있다. 장기미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고, 연장보육 교사 채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알리는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외에도 온라인 안내,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강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워크맨”을 통해 보육교사의 일과, 누리과정 개편,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제시한 질의를 모아 “어린이집용(원장·교사), 부모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묻고답하기”도 준비하였다. 원아모집과 새 학기 준비를 앞두고 연장보육 수요와 준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부모님,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지자체 담당자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차질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 맺으며

이번 개편안은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 것인지, 어린이집 지원 체계와는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지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어린이집 현장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은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안임에는 틀림없다. 어린이집 현장의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수많은 질의 속에서, 정책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 속에서 나온 고민들이 개편안 곳곳에 녹아 있다.

개편안에 대해 토론하고 설명하는 모든 시간은 항상 뜨거웠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환호와 탄식이 함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육정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의 큰 열정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은 행복한 보육을 할 수 있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